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

제10판

(2023. 9. 1.)

중앙방역대책본부

[주요 개정사항]

주요 개정사항
ㅇ 지원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되어,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중환자실 격리실 등에서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 처치를 받은 확진환자 ㅇ 지원기간: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종료한 날까지 지원하되,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 ㅇ 지원범위: 중환자실 내 격리입원료 및 격리병실료, 중증처치 비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처치 및 수술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등을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 ㅇ 서식: '법정감염병신고서' 미작성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ㅇ 부록: 질병관리청이 인정하는 치료비 삭제 ㅇ 코로나19 입원 · 격리 치료비 Q&A: 변경된 지원대상·기간·범위에 따라 Q&A 내용 수정

목차별 주요 개정사항		
목차	**구분**	**개정사항**
Ⅰ. 개요	개정	ㅇ 지원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되어,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중환자실 격리실 등에서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 처치를 받은 확진환자 ㅇ 지원기간: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치료를 시작한 날로부터 치료를 종료한 날까지 지원하되,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 ㅇ 지원범위: 코로나19 중증처치와 관련된 비용과 중환자실 격리입원료를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
Ⅱ. 입원 · 격리 치료비 지원 세부 절차	개정	ㅇ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등에 따라 1. 감염병 신고 내용 삭제
Ⅲ. 치료비 신청 구비서류 안내	개정	ㅇ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한 경우) △진단명, △확진 검체채취일, △격리실 입원기간, △중증면역저하자임을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
Ⅳ. 서식	개정	ㅇ 서식 1: 「입원격리 치료비 비용 신청서」에 치료비 의사소견서 등 유의사항 변경
Ⅴ. 부록	개정	ㅇ 부록 1: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 삭제

[목 차]

Ⅰ. 개요 **1**

1. 지원목적 1

2. 근거 1

3. 지원대상 1

4. 지원기간·범위·방식 등 2

Ⅱ.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세부 절차 **4**

1. 청구 및 비용지급 절차 4

Ⅲ. 치료비 신청 구비서류 안내 **6**

1. (의원·병원)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 6

Ⅳ. 서식 **7**

「서식1」 입원·격리 치료비 지용 신청서 서식 7

「서식2」 약제(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서식 **〈삭제〉** 8

「서식3」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삭제〉** 9

「서식4」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및 본인부담 사전고지서 **〈삭제〉** 10

「서식5」 입원·격리통지서 재발급 안내문(사전고지서) **〈삭제〉** 11

「서식6」 코로나19 입원·격리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 **〈삭제〉** 12

「서식7」 입원·격리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관리 대장 **〈삭제〉** 13

Ⅳ. 부록 **14**

「부록1」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 **〈삭제〉** 14

「부록2」 업무 처리별 세부 흐름도 **〈삭제〉** 15

「부록3」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Q&A 16

[일러두기]

○ 이 지침은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의 절차·방법 등을 안내할 목적으로 제정·운용하는 것으로서,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을 따름

○ 이번 제10판은 '23. 8. 31.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23. 8. 31. 검체채취자부터 해당 지침 적용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

Ⅰ. 개요

1. 지원목적

○ 국가 및 지자체가 확진환자에 대한 입원·격리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가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2.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등

- 위 규정을 근거로 감염병으로 인해 입원 등의 치료를 받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료비(본인부담금) 지원

- 다만, 외국인 중 「감염병예방법」 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에 따라 **해외유입에 따른 외국인 확진환자**의 경우 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능**

3. 지원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되어,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중환자실 내 격리실 등에서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처치**를 받은 확진환자

▶ 지원대상 세부기준

○ (확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Ⅱ 사례정의 1. 사례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자 포함('22.3.14.~별도 안내 시까지, 2023.8.31.부터 소급 적용)

○ (중환자실 격리실 등)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가 산정된 경우 또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지정격리병상) 중 중환자실이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

○ (중증처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 Ⅲ 확진환자 관리 1.확진환자 관리에서 〈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위중증 처치*
* 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 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

○ **(예외대상)** 「감염병예방법」 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에 따라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유입 감염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치료비(본인부담금)는 **확진환자의 국적에 따라 차등 지원**('20.8.24.~)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차등 지원]

지원 분류	지원범위	대상 국가▶ 분류 기준	비고
전액지원 국가	치료비(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내국인 지원범위와 동일하게	재외국민 **전액 지원 국가**	-
미지원 국가	치료비(본인부담금) 미지원 (전액 본인 부담)	재외국민 **미지원 국가**	상호주의 정보 미확인된 국가는 미지원 국가로 분류
일부 지원 국가	격리실 병실료 (본인부담금)만 지원	재외국민 **일부 지원 국가**	격리실 병실료 지원, 그 외 본인 부담

▶ **"대상 국가" 관련 상세내용**

○ **(조회 방법)** 대상 국가는 외교부를 통해 공관에 사전 고지되고, 매달 마지막 주에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게시하여 **익월 1일부터 적용됨**

*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에서 확인 가능

4. 지원기간·범위·방식 등

○ **(지원기간)**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 시작한 날로부터 치료 종료한 날까지 지원하되,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

- 다만, 중증면역저하자는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하여 치료한 경우도 지원

▶ 중증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치료기간 결정 가능

-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
- HIV/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
-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최근 3개월 내 스테로이드제를 이용한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투석이 필요한 환자
- 그 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면역저하자로 판단되는 자 등

※ (참고문헌) 영국 보건부 「Guidance for stepdown of infection control precautions and discharging COVID-19 patients('20.5.20)」의 '7. Severe immunosuppression definitions'

○ **(지원범위)** 중환자실 내 격리입원료 및 격리병실료, 코로나19 관련 중증처치 비용을 포함한 처치 및 수술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등을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

> ▶ **지원범위 상세내용**
>
> ○ **(지원)** 처치 및 수술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중증처치와 관련 있는 치료재료대(선별급여 포함)
>
> -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가-9 중환자실 입원료,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 - **(격리병실료)** 「중증환자전담 치료병상(지정격리병상)으로 지정받아 중환자실이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타병상에 한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가-10 격리실 입원료' 지원
>
> ○ **(미지원)** 진찰료(의료질평가지원금 등 포함), 검사비, 영상진단료, 식대, 중증처치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선별급여 포함)

- **(필수비급여)** 지원대상자의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에 따른 **필수비급여** 항목은 지급▶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의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서식(서식3)"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지원 방식)** 감염병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사후 정산 실시

○ **(지원 예산)** 내국인의 코로나19 치료비는 국가와 지자체 간 공동 부담(국비 50%)하며, 외국인의 치료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국비 100%)

Ⅱ.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세부 절차

1. 청구 및 비용지급 절차

○ **(청구)**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관련 입원 치료비 중 환자부담금*을 환자에게 받지 아니하고 환자의 주민등록상 관할보건소로 청구

* 환자부담금: ①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②급여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금, ③필수비급여항목 등

▶ 치료비 청구 시 유의사항

- ○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상 지원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만 포함하여야 하며 이외의 비용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재요청할 수 있음
- ○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 상 △진단명, △최초 확진 검체채취일, △중환자실 격리실 입원기간, △중증처치 기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중증면역저하자)**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초과), △진단명, △검체채취일, △중환자실 격리실 입원기간, △위중증 및 중증면역저하자에 해당하여 격리실 입원기간을 연장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 명시한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
- ○ **(외국인 치료비)** 외국인 치료비의 경우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 청구 가능
- ○ **(환자가 납부한 경우)**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대상인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납부한 경우 환자(또는 보호자)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보건소에 청구
-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지정격리병상) 중 중환자실이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에서 치료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의사소견서 등으로 제출

○ **(비용지급)** 내국인 치료비는 지자체(보건소 등)에서 심사하여 지급하고, 외국인 치료비는 질병관리청에서 심사하여 지급

- 질병관리청 및 지자체(보건소 등)는 청구된 서류 심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해당 기관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치료비 지급 기관]

<table>
<tr><th rowspan="2">분류</th><th colspan="2">내국인</th><th colspan="2">외국인</th></tr>
<tr><th>가입자</th><th>미가입자</th><th>가입자</th><th>미가입자</th></tr>
<tr><td>요양급여 공단 부담</td><td>○
(공단)</td><td>-</td><td>○
(공단)</td><td>-</td></tr>
<tr><td>요양급여 본인 부담</td><td>○
(지자체)</td><td rowspan="2">○
(지자체)</td><td rowspan="2">○
(질병청)</td><td rowspan="2">○
(질병청)</td></tr>
<tr><td>필수 비급여</td><td>○
(지자체)</td></tr>
<tr><td>비급여</td><td colspan="4">전액 본인 부담</td></tr>
</table>

〈 청구·지급 절차 〉

내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청구 · 지급 절차
건강보험 가입
공단부담금
의료기관
신청
심평원
심사
건보공단
지급
의료기관
환자부담금
(필수비급여 포함)
의료기관
신청
지자체
심사·지급
의료기관
건강보험 미가입
환자부담금
(필수비급여 포함)
의료기관
신청
지자체
심사·지급
의료기관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청구 · 지급 절차
건강보험 가입
공단부담금
의료기관
신청
심평원
심사
건보공단
지급
의료기관
환자본인부담금
(필수비급여 포함)
의료기관
신청
지자체
취합
질병관리청
심사·지급
의료기관
건강보험 미가입
환자본인부담금
(필수비급여 포함)
의료기관
신청
지자체
취합
질병관리청
심사·지급
의료기관

Ⅲ. 치료비 신청 구비서류 안내

1. (의원·병원)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	
비용 신청서	○ **(의원·병원)** 입원·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부[서식1]
공통서류	○ **진료비세부내역서** 1부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서식1의 서식으로 제출 * 지원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만 포함하여야 하며 이외의 비용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재요청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1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제11호 서식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진단명, △최초 확진 검체채취일, △중환자실 격리실 입원기간, △중증처치 기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지정격리병상) 중 중환자실이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에서 치료한 경우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한 경우) 중증면역저하자임을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 전원하여 최초 검사결과지가 없는 경우, 최초 확진 검체채취일을 알 수 있는 전원기록지 등 제출
입원·격리대상자 (또는 보호자) 신청 시 제출서류	○ **통장(계좌) 사본** 1부
	○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1부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의료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서식 1 입원 · 격리 치료비 비용 신청서 서식

입원·격리 치료비 비용 신청서

접수 보건소명		접수일자

신청인 (개인 또는 의료기관)	성명(의료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입원·격리(대상자와의 관계(의료기관은 작성 생략)
	주소		
입원·격리 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국적
	신고일자		
	주소		
입원·격리 세부사항	진단명		
	격리시작일		격리해제일
	확진검사 확인일		
진료비	청구금액(본인부담금 및 필수비급여)		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제4호 및 제6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입원·격리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귀하

제출 서류 [2]		
비용 신청서	1. 입원·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부[서식1]	
공통서류	○ **진료비세부내역서** 1부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서식1의 서식으로 제출 * 지원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만 포함하여야 하며 이외의 비용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재요청할 수 있음	□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1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제11호 서식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진단명, △최초 확진 검체채취일, △중환자실 격리실 입원기간, △중증처치 기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지정격리병상) 중 중환자실이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에서 치료한 경우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한 경우) 중증면역저하자임을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	□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 전원하여 최초 검사결과지가 없는 경우, 최초 확진 검체채취일을 알 수 있는 전원기록지 등 제출	□
입원·격리대상자 (또는 보호자) 신청 시 제출서류	○ **통장(계좌) 사본** 1부	□
	○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1부	□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의료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신고일자」는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한 날짜로 입원·격리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2)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는 오른쪽 네모박스에 √ 체크합니다.

서식 2 약제(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서식(약국)

〈삭제〉

서식 3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구분	항목	필수 사유	급여대체항목	비고

서식 4 **코로나19 입원 · 격리치료비 지원 및 본인부담 사전고지서**

<삭제>

서식 5 | **입원 · 격리통지서 재발급 안내문(사전고지서)**

<삭제>

서식 6 **코로나19 입원·격리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

<삭제>

서식 7 입원 · 격리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관리 대장

〈삭제〉

부록1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

〈삭제〉

부록 2 업무 처리별 세부 흐름도

〈삭제〉

부록 3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Q&A

1.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Q1.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 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되어, ②**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③**중환자실 내 격리실 등**에서 ④**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처치**를 받은 확진환자

※ '23. 8. 31. 검체채취자부터 적용하며, 이전 검체채취자의 경우 이전 지침을 따름

① **(확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 Ⅱ 사례정의 1. 사례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② **(10일 이내 내원)**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내원하고, 증상악화로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초과하여 중환자실 격리실로 이동하여 중증처치를 받는 경우도 지원

* (예시) (9.1.) 확진 → (9.10.) 내원(일반 병실 등 입원) → (9.11.) 중환자실 격리실 입원 → (9.12.) 중증처치 시작

③ **(중환자실 내 격리실 등)**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가 산정된 경우 또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지정격리병상) 중 중환자실이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타병상(지정격리병상 중 준중증 환자 대상 병상 입원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수가코드: AJ010, AJ011, AJ020, AJ021

④ **(중증처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 Ⅲ 확진환자 관리 1.확진환자 관리에서 〈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위중증 처치

※ (주의) 중환자실 내 격리실 등에서 치료받았더라도 중증처치를 받지 않은 환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 Ⅲ. 확진환자 관리 1.확진환자 관리

단계	정의	중증도 분류
1	일상생활 지장 없음(no limit of activity)	경증 이하
2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나 산소치료 불필요 (limit of activity but No O2)	
3	비관산소치료(O2 with nasal prong)	중등증
4	산소마스크(O2 with facial mask)	
5	비침습인공호흡기 / 고유량산소요법 (non-invasive ventilation / high flow O2)	위중증
6	침습인공호흡기 (invasive ventilation)	
7	다기관손상 / ECMO / CRRT (multi-organ failure/체외막산소공급/지속적신대체요법)	
8	사망(death)	사망

Q2.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

○ 국내감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해외유입 감염의 경우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하여 ▲전액지원, ▲미지원, ▲일부 지원 국가로 분류

지원 분류	지원범위	비고
전액지원 국가	치료비(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내국인과 동일한 지원범위에 한하여 지원	-
미지원 국가	치료비(본인부담금) 미지원 (전액 본인 부담)	상호주의 정보 미확인된 국가는 미지원 국가로 분류
일부 지원 국가	격리실 병실료 (본인부담금)만 지원 *내국인과 동일한 지원범위 중 격리병실료에 대해서만 지원	격리실 병실료 지원, 그 외 본인 부담

○ **(조회 방법)** 대상 국가는 외교부를 통해 공관에 사전 고지되고, 매달 마지막 주에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게시하여 익월 1일부터 적용됨(입국일 기준)

*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에서 확인 가능

Q3.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기간?

○ **중환자실 내 격리실 등*에서 치료 시작한 날로부터 치료 종료한 날까지 지원**하되, 최초 검체 채취일로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지정격리병상) 중 중환자실이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타병상

※ (주의) 중환자실 내 격리실 등에서 치료받았더라도 중증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 **(중증면역저하자)** 중증면역저하자는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하여 치료한 경우도 지원하고,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초과하여 내원한 경우도 지원

* (예시) (9.1.) 확진 → (9.13.) 내원 → (9.14.) 중환자실 격리실 입원 → (9.15.) 중증처치 시작

**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20일 초과) 중증면역저하자임을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

◆ 지원기간

2. 지원 및 청구범위

Q4.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범위는?

○ **(지원범위)** 중환자실 내 격리입원료 및 격리병실료, 중증처치 비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처치 및 수술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등을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범위 상세내용**

○ **(지원)** 처치 및 수술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중증처치와 관련 있는 치료재료대(선별급여 포함)

-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가-9 중환자실 입원료,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지원
- **(지정격리병상)** 「중증환자전담 치료병상(지정격리병상)으로 지정받아 중환자실이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타병상에 한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가-10 격리실 입원료' 지원

○ **(미지원)** 진찰료(의료질평가지원금 등 포함), 검사비, 영상진단료, 식대, 중증처치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선별급여 포함)

-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분류번호 '가-9 중환자실 입원료',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만 지원하며 식비,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미지원

*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 관리료 중 중환자실 마스크 비용(수가코드: AJ031) 포함하여 지원

- **(지정격리병상 병실료)** 중증환자전담 치료병상(지정격리병상) 중 중환자실이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타병상에 한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가-10 격리실 입원료*'만 지원하며, 식비,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미지원

* 가-10 격리실 입원료 중 중환자실 마스크 비용(수가코드: AK034, AK035) 포함하여 지원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지정격리병상) 중 중환자실이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에서 치료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의사소견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 **(미지원)** 진찰료(의료질평가지원금 등 포함), 검사비, 영상진단료, 식대, 중증처치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선별급여 포함)

- **(응급실)**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축소에 따라 응급실 치료비 미지원
- **(퇴원약)**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축소에 따라 퇴원약 및 관련 부대비용* 미지원

* 퇴원약제비, 퇴원약조제료, 외래의약품관리료

- **(확진환자 투석)** 코로나19 투석환자의 격리 관련 수가와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행위 수가(OH011)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사항 없음
- **(코로나19 PCR)** 코로나19 PCR 검사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사항 없음

Q5. 코로나19 입원동안 기저질환 및 합병증의 치료비 지원 여부는?

○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축소에 따라 기저질환 관련 지원사항 없음

Q6.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혈액 투석 치료를 받을 때 지원 여부 및 범위는?

○ **(확진환자 투석)** 코로나19 투석환자의 격리 관련 수가와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행위 수가(OH011)는 관련 수가 종료 및 본인부담률 변경되어 **투석관련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사항 없음**

- **'23. 8. 31.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수가 변경에 따라 8.31. **진료분부터 본인부담금 지원사항 없음**

  *** 검체채취일이 '23.8.31. 이전인 확진환자의 혈액투석의 격리 및 행위 수가도 '23.8.30. 진료분까지만 지원**

Q7. 중증처치 중인 입원환자의 먹는 치료제 원외처방(약국) 시 발생하는 비용지원 여부는?

○ 치료비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중증환자의 먹는 치료제를 원외(약국)에서 처방하는 경우 부대비용(조제료 등) 지원

- 중환자실 내 격리실 등에서 중증처치 받지 않은 환자는 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미지원

Q8. 응급실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는?

○ 중환자실 내 격리실 등에서 치료 시작한 날로부터 치료 종료한 날까지 지원하기에 **응급실 치료비 미지원**

Q9. 확진환자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여부는?

○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축소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중증환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중환자실 내 격리입원료 및 격리병실료, 중증처치 비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처치 및 수술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등을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

-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 시작한 날로부터 치료 종료한 날까지 지원하되,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

Q10. 코로나19 이외의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의료(요양)기관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되어 해당 의료(요양)기관의 격리실로 이동한 경우(코호트 격리) 지원 여부는?

○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축소에 따라 코호트격리 관련 비용 미지원

Q11.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하는 입원·격리 치료비 중 지원 가능한 비급여 범위는?

○ 코로나19 관련한 처치 및 수술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중 필수비급여 항목은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3) 제출 시 지원

※ 질병청·지자체에서 치료비 심사 시에 코로나19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20.7.9.)'에 따라 필수 비급여 청구 시 급여 대체 가능 품목은 없었는지 판단하여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3) 제출

○ **(의사소견서)** 치료비 청구를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하여 제출 시 해당 비용지원

- 치료비 청구 시 제출서류인 '의사소견서'를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라 '법정감염병신고서'로 갈음할 수 없어 '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 △진단명, △최초 확진 검체채취일, △중환자실 격리실 입원기간, △중증처치 기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의사소견서 제출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지정격리병상) 중 중환자실이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에서 치료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의사소견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 **(약제·치료재료)**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3) 제출 시 지원

○ **(병원비품)** 비급여 사항도 아니며, 입원료에 포함된 항목으로 산정 불가

- 환의, 체온계, 이불, 시트, 대변기, 소변기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의료기관의 비품 등 참조

Q12. 외국인 입원·격리 치료비 지급 방법은?

○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직접 지급

*「감염병예방법」 제67조 및「2023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 참조

○ 다만, 상호주의에 원칙에 따라 치료비를 일부지원하거나 미지원 할 수 있고,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지 않음

Q13. 입원·격리 비용 신청서 서식 안내의 제출서류 중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대해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되는지?

○ 치료비 청구 시 제출서류인 '의사소견서'를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라 '법정감염병신고서'로 갈음할 수 없어 **'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 △진단명, △최초 확진 검체채취일, △중환자실 격리실 입원기간, △중증처치 기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의사소견서 제출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지정격리병상) 중 중환자실이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에서 치료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의사소견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한 경우) △진단명, △확진 검체채취일, △격리실 입원기간, △중증면역저하자임을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

Q14.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추후 청구하는 방법은?

○ 환자가 주소지 보건소에 직접 입원·격리 치료비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

- 환자가 보건소에 직접 입원·격리 치료비 신청 서류를 제출

Q15. 주민등록이 말소된 내국인의 경우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절차는?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3. 기타

Q16. 산재, 보훈 등 다른 진료비 지원제도와 관계는?

○ 보훈환자, 산재환자 등 다른 지원제도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제도(보훈, 산재)에서 보호(지원)하고 일부 환자본인부담금(필수비급여) 등 기존 제도에서 보호되지 않는 항목은 입원·격리 치료비로 지원